

## 2026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시흥시는 관내 모범이 되는 점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「2026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본 공고는 기 공고(시흥시 공고 제2026-1978호)에 따른 신청자 미달 및 제출서류 변경(추가)으로 인해 실시하는 재공고입니다. 기 공고에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는 서류를 본 재공고에 제출한 것으로 같음하며,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11.

시 흥 시 장

### 1

#### 사업개요

- (신청기간) 2026. 8. 11.(화) ~ 8. 21.(금) 18시까지
- (지원대상) 시루 가맹점 중 관내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
※ 본 사업은 「2026년 시흥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」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
- (지원규모) 20개소
- (지원내용) 영업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(최대 300만원) 및 인증현판 수여

### 2

#### 지원대상

□ 신청자격

- 기 공고일(2026. 7. 20.) 기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이면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  - 사업자등록증 상 2021. 7. 20.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

- **소상공인 기준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[붙임3]에 해당
- ※ 용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[붙임2]에 해당되지 아닐 것

## □ 제외대상

- 제조업 등 소공인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
- 실내건축공사업, 광고물제작업, 건축업, 건설업, 제조업 등 인테리어 업종
-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 제한 업종,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등[붙임2]
- 휴·폐업 중이거나 무점포 사업자
-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**매출액(수입금액)을 신고하지 않았거나, 연매출액(수입금액)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**
-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**2023~2026년도 시흥시 및 경기도, 타 시·군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 동일·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**

## 3

## 지원내용

### ○ (시설개선) 간판·인테리어·안전·위생 등 영업장 시설개선

※예시 : 노후 간판 교체, 조명·도배·바닥 선텀 등 인테리어 공사, 출입문 교체, 소방·전기 등 안전시설 보수, 주방 후드·덕트 등

- 지원불가 : 자산성 물품 구매·렌탈 비용(단, **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**는 지원 가능)

### ○ (지원금액) 업소별 최대 300만원

-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%이상 필수

(예시)

| 간판 및 기타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지원금액             |   | 자기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341만원</b><br>(공급가액: 310만원)<br>(부가세액: 31만원) | = | <b>300만원(최대)</b> | + | <b>41만원</b><br>(자부담 10% + 초과분) |

- (인증현판) 명품점포 인증현판 수여(유효기간:3년)
- (지원대상) 20개소(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, 지원 규모 변동 가능)
- (지원제외)

-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
(예) PC, TV, 냉장고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소파, 로고라이트, 디지털 사이니지 등  
※ 지원 가능: 배리어프리 키오스크, 손님용 의자·테이블(좌식→입식 시에만 가능) 등
- 점포 이전, 상호·업종 등 변경을 위한 시설개선 내용 지원 불가(신청 당시 내용만 유효)
- 선정 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
(지원 신청 → 평가 및 선정 →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사업 진행)
- 불법건축물(예: 비닐하우스), 불법광고물(경관디자인과에 확인) 지원 불가
- 선정 통보 후 제출 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 처리

## 4 신청 및 제출서류

- (신청기간) 2026. 8. 11.(화) ~ 8. 21.(금) 18시
  - 주말·공휴일 및 평일 12시~13시(점심시간) 접수 불가
  - 기간 내 서류 미비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(신청방법) 방문 접수(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골목상권팀)
  - ※ 1인 1건만 신청 가능, 「2026년 시흥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」과 중복 지원 불가
- (문의) ☎031-310-2609 (평일 09:00 ~ 18:00)
- (신청서류)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
| 구분   | 제출서류 ※신청서식 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 수  | 1. 지원 신청서(제1호 서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2. 추천서 2부(제2호 서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제3호 서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4. 시공계획서(제4호 서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5. 견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6.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7.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8. 사업자등록증 사본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정보 공동이용<br>사전동의서(제5호 서식)<br>제출 시 생략 가능 |
|      | 9.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10. 2025년 매출증빙서류 1부(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)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당 시 | 11. 간판,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<br>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등록증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12. 가점 사항 관련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5

## 선정방법

## ○ (선정방법)

- 1차 정량평가: 사업부서(소상공인과)
- 2차 정성평가: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진행

## ○ (선정기준) 정량·정성평가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

-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자 > 매출액이 높은 자 > 업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정

## ○ (평가항목)

- 정량평가(50점) : 연매출액, 영업기간
- 정성평가(50점) : 적정성, 효과성, 지속성, 모범성, 신뢰성
- 가점사항(최대 10점) : 착한가격업소,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, 상시 종업원 고용, 표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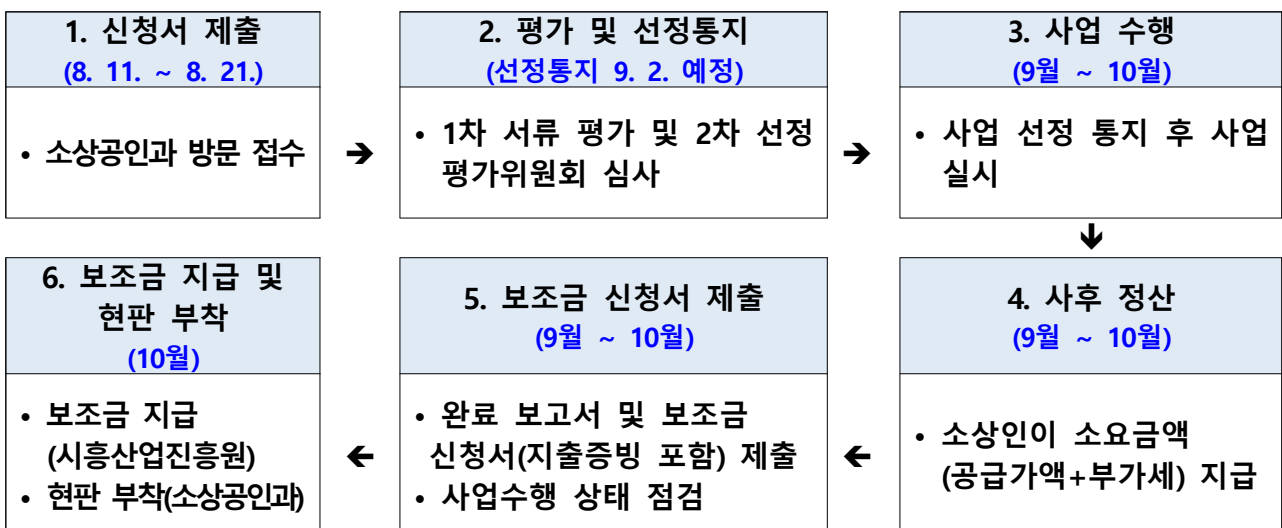
## ○ 선정 발표 : 2026. 9. 2.(수) 예정

- 선정 여부는 문자 개별 통보하므로 신청서 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
- 선정일은 접수 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6

## 절차 및 유의사항

## □ 사업 절차



※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## □ 유의 사항(필독)

### ○ 지원 유의 사항

- 「2026년 시흥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」과 중복 지원 불가
- 1인 1건만 신청 가능,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
- 지원 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
- 소상공인 점포 1개소당 시공업체를 1개로 제한함
- 신청 시 추천서 2부 제출 필수(미비 시 반려 및 선정 불가)

### ○ 시공(제작·대행)업체 유의 사항

- 시흥시 내 소재 시공업체로 제한(반드시 시흥시 소재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)  
※ 예외 :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시 시공업체 소재 무관 (단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의 접근성 인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)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
(예: 사업자등록증 상 간판 제작업만 있는 경우 인테리어 시공 불가)
- 간판(옥외광고물)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,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 등록증 필수
-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형제 등)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- 시공업체당 사업 신청 소상공인 최대 10개사까지 접수 가능

### ○ 지원 선정 취소

- 신청서 허위 작성, 1인 중복신청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**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(제작)한 경우**
- 자부담금을 확보할 금전적 능력이 없는 경우
- 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증빙자료 미제출·부실제출, 기한 내 사업 미완료 등 사업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- 타 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제작기간,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지정기한 내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
(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사업을 마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)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
- 신청 기업에 휴·폐업·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시흥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 ○ 지원 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

- 결정된 지원 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를 소상공인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,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
- 시공비용이 증가된 경우 지원금 변동되지 않고(상향 불가) 감소한 경우 감액하여 지급
-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당해 사업 신청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

## ○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(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허위 시공(구매), 서류 대필, 수수료 요구 및 지불, 과다견적, 제3자 부당개입, 관련 서류 위·변조,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)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시흥시 내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※ 시흥시는 2026년 시흥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관련 **일체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, 사업자는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 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※ **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·숙지하고 자필 서명 후 신청하여야 하며,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| 선정 평가표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평가항목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우높음              | 높음                  | 보통                  | 낮음                  | 매우낮음                |
| 정량평가<br>(50) | 매출액(25)<br>※ 2025년 기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              | 23                  | 21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          | 17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억 이상<br>~        | 3억 이상<br>~<br>4억 미만 | 2억 이상<br>~<br>3억 미만 | 1억 이상<br>~<br>2억 미만 | 1억 미만<br>~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(25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               | 23                  | 21                  | 19                  | 17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년 이상             | 8년 이상<br>~<br>9년 미만 | 7년 이상<br>~<br>8년 미만 | 6년 이상<br>~<br>7년 미만 | 5년 이상<br>~<br>6년 미만 |
| 정성평가<br>(50) | 적정성 (10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계획 및 지원 내용 적정성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효과성 (10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 효과성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지속성 (10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속 경영 가능성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모범성 (10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 점포의 벤치마킹 모델 가능성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신뢰성 (10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적 신뢰성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가 점<br>(10)  | 최대<br>10점             |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흥시 지정 착한가격업소(3점)</div>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(3점)(경사로, 안전 난간, 장애인 화장실 등)</div>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 종업원 고용 점포(2점)(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, 가족 제외)</div>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2023년도 이후 소상공인 관련 표창수여자(정부, 국회, 중앙부처, 광역 및 기초지자체만 인정)(2점)</div>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| 표준산업분류      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3409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102 중        | 담배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107 중       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209 중        | 잎담배 도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331          | 주류 도매업<br>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<br>*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333          | 담배 도매업<br>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416, 46417 중 | 모피제품 도매업<br>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463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221 중        | 주류 소매업<br>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<br>*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640 중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811 중        | 약국, 한약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859 중        | 성인용품 판매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7993 중        | 다단계 방문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2991 중       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5102          | 여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6211          | 일반유흥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6212          | 무도유흥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8122 중       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821 중        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3992          |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3999 중       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4             | 금융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5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6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<br>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<br>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 |

| 표준산업분류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68       | 부동산업<br>*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<br>- 부동산관리업(6821)<br>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<br>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| 76390 중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4992    | 지주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1531 중  |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<br>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1      | 수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904 중  | 감정평가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330   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993   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999 중 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6       | 보건업<br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<br>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<br>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113   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121    | 골프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2 중  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21 중 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41 중  | 복권 판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49    |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1291   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612 중  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<br>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<br>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6992   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6999 중 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**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관련  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개정 '25.10.1.)**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 | 규모 기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19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40억원 이하 |
| 2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4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20억원 이하 |
| 4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14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15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| C20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21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23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| C25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| C26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28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29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30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5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   | D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7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00억원 이하 |
| 18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9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80억원 이하  |
| 20.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1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2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| C13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       | C16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17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C22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   | C27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31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0.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1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60억원 이하 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50억원 이하 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<br>40억원 이하  |
| 35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 M  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30억원 이하  |
| 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  | N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| R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| C34       | 평균매출액등<br>15억원 이하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| I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| P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| Q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 | S(S94 제외) |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